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

제 권 판 결

사 건 2007카공 43 공시최고

신 청 인 이 찬희(680903-******)

밀양시 삼문동 15-26

유정청구타운 102동 509호

판결선고 2007. 11. 20.

주 문

상기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 유

상기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. 8. 20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. 11. 20. 14:00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,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7년 11월 일

판 사 권 태 관

<증서의 중요한 취지>

증서의 종류 : 약속어음

기호 및 번호 : 자가 09604921호

액면금액 : 금 8,000,000원

발행일 : 2006. 6. 20

발행인 : 이찬희

지급기일 : 2006. 8. 31.

발행지·지급지 : 밀양시

지급장소 :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밀양시지부

최후소지인 : 신청인